

◎ ^등大法院長 選任方法

○ 現行 : §105①

○ 民主黨 : §103①

○ 民主黨 : §103①

現行과 같음

第105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.

②大法院判事는 大法院長의 提

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.

③大法院長과 大法院判사가 아닌 法官은 大法院長이 任命한다.

第103條 ①大法院長인 大法官

은 法官推薦會議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國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. 大統領

은 法官推薦會議의 提請이 있으면 國會에 同意를 要請하고, 國會의 同意를 얻으면 任命하여야 한다.

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이 法官推薦會議의 同意를 얻어 提請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.

이 경우에 提請이 있으면 大統領은 이를 任命하여야 한다.

③大法院長과 大法官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議決을 거쳐 大法院長이 任命한다.

④法官推薦會議는 大法官會議에서 選出하는 6人, 法官資格이 있는 者中에서 國會가 推薦하는 3人, 法官資格이

있는 者中에서 大統領이 指名하는 3人, 大韓辯護士協會에서 選出하는 3人으로 構成한다.

⑤法官推薦會議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.

○ 大法院長, 大法官 選任方法

- 司法府의 構成에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와 國民이 選出한 大統領의 관여를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國民的 正當性을 확보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으며

- 그밖에 訴訟當事者인 辯護士의 관여를 인정할 경우 裁判의 獨立性 보장이라는 司法府 獨立의 本질적 要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.

○ 一般法官 選任方法

- 人事節次의 간편성 속을 위하여 大法院長이 任命하도록 한 것임

- 民主黨案대로 大法官會議의 議決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함.